

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 217 호

발의일자 : 2016. 3. 21.

제 안 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용어를 순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어순을 수정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함(안 제1조)

나 “용어의 정의” 를 “정의” 로 수정하고, “가지지” 를 “갖지” 로 용어를 수정함.(안 제2조)

다 “공무원” 을 “구청 소속 공무원” 으로 수정함(안 제11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2조 제목 “용어의 정의” 를 “정의” 로 수정하고 “가지지” 를 “갖 지” 로 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
로 한다. 다만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.

1. (생략)
2.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
3.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

② (생략)
제2장 자문위원회

제7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을 위하여 강남구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부구청

-----.

----- 법적 지위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취득한 사람
3. -----
----- 않은 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
제2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

제7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

--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15명
이내-----

--- 사람으로 ---.

1. 당연직 위원: 부구청

1~3.(개정안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제2장 (개정안과 같음)

제7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~② (개정안과 같음)

1~2. (개정안과 같음)

장, 구의회 의원, 교육청·경찰서·고용안정센터·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

장, 구의원 1명 및 관내 교육청·경찰서·고용센터·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업무 부서장

2. 민간위원 :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

2. -----
-----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- ③ (생략)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
-----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--.

③~④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
제11조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-----

-----, 구청 소속 공무원이 ---

